

안전교육의 과정·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
(제78조제2항관련)

1. 교육과정·교육대상자·교육시간·교육시기 및 교육기관

교육과정	교육대상자	교육시간	교육시기	교육기관
강습교육	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	24시간	신규종사전	협 회
	위험물운송자가 되고자 하는자	16시간		협 회
실무교육	안전관리자	8시간 이내	신규종사후 2년마다 1회	협 회
	위험물운송자	8시간 이내	신규종사후 3년마다 1회	협 회
	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	8시간 이내	신규종사후 2년마다 1회	기술원

비고

1. 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및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의 공통과목에 대하여 둘 중 어느 하나의 강습교육 과정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강습교육 과정에서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.
2. 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및 위험물운송자 실무교육의 공통과목에 대하여 둘 중 어느 하나의 실무교육 과정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실무교육 과정에서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2. 교육계획의 공고 등

- 가. 협회의 회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실시 60일전까지 일시·장소 그 밖의 강습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것
- 나. 기술원 또는 협회는 실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것

3. 교육신청

- 가. 강습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가 매년 초에 지정하는 기간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할 것
- 나. 실무교육 대상자는 매년 1월말까지 교육수강신청을 할 것. 다만, 새로이 교육대상자가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실시 30일전까지 교육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.

4. 교육일시 통보

- 가. 기술원 또는 협회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신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실시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.

5. 기 타

- 가. 기술원 또는 협회는 교육대상자별 교육의 과목·시간, 강사의 자격, 교육의 신청, 교육수료증의 교부·재교부, 교육수료증의 기재사항, 교육수료자명부의 작성·보관 등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

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및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의 과목에는 각 강습교육별로 다음 표에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교 육 과 정	교 육 기 관	
안전관리자 강습교육	·제4류 위험물의 품명별 일반성 질, 화재예방 및 소화의 방법	·연소 및 소화에 관한 기초이론 ·모든 위험물의 유별 공통성질과 화 재예방 및 소화의 방법
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	·이동탱크저장소의 구조 및 설비작동법 ·위험물운송에 관한 안전기준	·위험물안전관리법령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계된 법령